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1천 3백 74만 6천 원

○ 징수결정액 : 4백 25만 9천 원

○ 실제수납액 : 2백 68만 6천 원

○ 결손처분액 : 1백 57만 4천 원

○ 미 수 납 액 : 0 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63.1%(전년도 92.2%)임.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13,746**	**4,259**	**2,686**	**-**	**-**	**-**	**19.5**	**63.1**
세외수입	**13,746**	**4,259**	**2,686**	**-**	**-**	**-**	**19.5**	**63.1**
경상적세외수입	60	50	50	-	-	-	83.2	100.0
이자수입	60	50	50	-	-	-	83.2	100.0
기타이자수입	60	50	50	-	-	-	83.2	100.0
임시적세외수입	13,686	4,154	2,580	1,574	-	-	18.9	62.1
보조금반환수입	6,857	970	970	-	-	-	14.1	100.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6,857	970	970	-	-	-	14.1	100.0
기타수입	1,445	1,610	1,610	-	-	-	111.4	100.0
그외수입	1,445	1,610	1,610	-	-	-	111.4	100.0
지난년도수입	5,384	1,574	-	1,574	-	-	-	-
지난년도수입	5,384	1,574	-	1,574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	56	56	-	-	-	-	100.0
환수금	-	56	56	-	-	-	-	100.0
부정이익환수금	-	56	56	-	-	-	-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23억 3천 6백 43만 7천 원

○ 예산증감 : 해당 없음

○ 예산현액 : 23억 3천 6백 43만 7천 원

○ 지 출 액 : 20억 9백 13만 8천 원

○ 이 월 액 : 해당 없음

○ 집행잔액 : 3억 2천 7백 29만 9천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전년도 19%)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 원, 낙찰차액 1천 8백 8십만 원, 지출잔액 3억 5백 49만 9천 원임.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2,336,437**	**2,009,138**	**0**	**327,299**	**14.0**
사 업 예 산 계	**1,765,311**	**1,565,712**	**0**	**199,599**	**11.3**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93,089**	**359,670**	**0**	**33,419**	**8.5**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93,089**	**359,670**	**0**	**33,419**	**8.5**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3,000	11,178	0	1,823	14.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1,325	319,743	0	31,582	9.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764	28,749	0	15	0.1
시정 청렴도 향상	**198,300**	**153,323**	**0**	**44,977**	**22.7**
시정 청렴도 향상	**198,300**	**153,323**	**0**	**44,977**	**22.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30,900	104,786	0	26,114	19.9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7,400	48,537	0	18,863	28.0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	**72,920**	**67,818**	**0**	**5,102**	**7.0**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72,920**	**67,818**	**0**	**5,102**	**7.0**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2,920	67,818	0	5,102	7.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안전도시 서울 구현	**118,450**	**107,769**	**0**	**10,681**	**9.0**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 제거	**118,450**	**107,769**	**0**	**10,681**	**9.0**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6,820	0	3,120	7.8
안전감사 활동 강화	78,510	70,949	0	7,561	9.6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94,842**	**355,385**	**0**	**39,457**	**10.0**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	**314,790**	**277,431**	**0**	**37,359**	**11.9**
부조리신고 보상	0	0	0	0	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440	63,344	0	2,096	3.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9,350	214,087	0	35,263	14.1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42,400**	**40,874**	**0**	**1,526**	**3.6**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2,400	40,874	0	1,526	3.6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37,652**	**37,080**	**0**	**572**	**1.5**
기강감찰 운영	37,652	37,080	0	572	1.5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587,710**	**521,748**	**0**	**65,962**	**11.2**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587,710**	**521,748**	**0**	**65,962**	**11.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55,140	0	7,400	11.8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29,715	0	7,105	19.3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62,970	0	8,530	11.9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28,849	0	7,201	2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132,007	0	22,793	14.7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38,623	0	3,377	8.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6,327	0	674	0.5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4,999	0	1	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43,118	0	8,882	17.1
일 반 예 산 계	**571,126**	**443,426**	**0**	**127,700**	**22.4**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51,971	235,082	0	116,889	33.2
기본경비(공공감사담당관)	38,246	35,438	0	2,808	7.3
기본경비(안전감사담당관)	52,033	51,475	0	558	1.1
기본경비(조사담당관)	91,736	91,244	0	492	0.5
기본경비(인권담당관)	37,140	30,186	0	6,954	18.7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1건, 5백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부조리신고 보상」 사업의 추진 근거였던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편성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 신고 보상	301-14 기타보상금	5,000	-	△5,000	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230,950	5,000	-	235,950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3년도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2백만원

○ 매각·폐기 등 7백만원

○ 당해연도말 1억 2천 2백만원으로

○ 총 수량 82개, 현재액은 1억 2천 2백만원임.

〈 2023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단위	정수	내용연수	구분	2022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3년도말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계	
합계						수량	86	3	-	-	-	3	-	-	-	7	7	82
						금액	128	2	-	-	-	2	-	-	-	8	8	122
1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74	6	수량	79	3	-	-	-	3	-	-	-	7	7	75
						금액	74	2	-	-	-	2	-	-	-	8	8	70
2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대	3	8	수량	3	-	-	-	-	-	-	-	-	-	-	3
						금액	6	-	-	-	-	-	-	-	-	-	-	6
3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대	3	9	수량	3	-	-	-	-	-	-	-	-	-	-	3
						금액	2	-	-	-	-	-	-	-	-	-	-	2
4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대	0	8	수량	1	-	-	-	-	-	-	-	-	-	-	1
						금액	45	-	-	-	-	-	-	-	-	-	-	45

Ⅱ.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천 3백 74만 6천원이나, 4백 25만 9천원 징수 결정되어 2백 68만 6천원이 수납되었고, 1백 57만 4천원이 정리보류로 결손처리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9.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63.1%로 세입징수 실적이 전년도(92.2%) 대비 29.1% 감소한 수준이나, 이는 관련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무재산을 근거로 1백 57만 4천원이 정리보류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13,746**	**4,259**	**2,686**	**-**	**-**	**-**	**19.5**	**63.1**
세외수입	**13,746**	**4,259**	**2,686**	**-**	**-**	**-**	**19.5**	**63.1**
경상적세외수입	60	50	50	-	-	-	83.2	100.0
임시적세외수입	13,686	4,154	2,580	1,574	-	-	18.9	6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	56	56	-	-	-	-	100.0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삭제

○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부정이익환수금'처럼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5만6천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보조금반환수입	6,857,000	970,320	970,320	5,886,680	14.1%
기타수입(그외수입)	1,445,000	1,609,580	1,609,580	164,580	111.4%
지난년도수입	5,834,000	1,573,640	0	5,834,000	-
부정이익환수금	0	56,000	56,000	56,000	-

▶ 과부족 상세 사유

- **보조금반환수입** : 최근 5년간(2018~2022) 민간보조금 반납 징수(전망)액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업 진행에 따라 반납금액이 변동되어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움.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금(353,810원), 2022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616,510원)
- **그외수입** : 각종 수당 환수 및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 관련 예산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으로 추계하므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이 발생
- **지난년도수입** : 1) 안전감사담당관(1,573천원)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이나 채무자 무재산으로 장기 체납된 것으로 '23년 2월 정리보류 결의하였음.

  2) 조사담당관(3,811천원) '23년 예산편성 당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서울시 승소(2013.11.21.)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중 일부(3,811천원)가 체납 중으로, 해당 금액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11.11. 채무자의 체납액(잔액) 완납으로 징수 완료됨.
- **부정이익환수금** : 2021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액 환수(28,000원) 및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28,000원)

- ‘보조금반환수입’은 예산현액(685만7천원) 대비 실제수납액(97만원) 비율(14.1%)이 저조하고, ‘그외수입’은 예산현액(144만5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11.4%(160만9천원)로 과다하게 차이나고 있음.

- 또한, ‘지난년도수입’은 조사담당관 소송비용확정액 중 일부(3,811천원)가 체납중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 11월에 체납액 완납으로 징수 완료되었고, 안전감사담당관 소송비용확정액(1,573천원)은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장기 체납되어 2023년 3월 정리보류에 따라 실제수납액은 없음.

※ 안전감사담당관 소송비용확정은 소송심의회 개최 결과 ‘추심포기’로 의결되었음(법률지원담당관-34978, 2022.12.26.).

-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 기법에 의하지 않은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별 과다·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수당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이 있었는바, 감사위원회는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비위 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시행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반납 등 수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 도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및 처리사유
2021	2021-01-18	651,330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감사담당관
	2021-01-15	**463,700**	**학비보조수당 반납/ 감사담당관**
	2021-02-08	**81,350**	**퇴직공무원 특수직무수당 반납 / 안전감사담당관**
	2021-06-09	75,000	수수금지 금품등 세입조치 3건 / 조사담당관
	합 계	**2,497,190**	
2022	**2022-01-04**	**773,260**	**연가보상비 과지급 반납 3건 / 감사담당관**
	2022-02-03	1,677,480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 / 감사담당관
	합 계	**2,450,740**	
2023	**2023-01-04**	**721,970**	**연가보상비 반납 / 감사담당관**
	2023-02-06	387,340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 / 감사담당관
	2023-01-05	465,470	복리후생비 사후 정산 / 공공감사담당관
	2023-05-17	34,800	관용차량 보험 특약비(교통비) 세외수입 부과 / 안전감사담당관
	합 계	**1,609,580**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불용처리 과다 사업 검토

○ 감사위원회의 예산현액은 23억 3천 6백만원으로, 이중 20억 9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4.0%(불용액 3억2천7백만원)로 전년(19.0%)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3.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2,336,437**	**2,009,138**	**0**	**327,299**	**14.0**
사 업 예 산 계	**1,765,311**	**1,565,712**	**0**	**199,599**	**11.3**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93,089	359,670	0	33,419	8.5
시정 청렴도 향상	198,300	153,323	0	44,977	22.7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	72,920	67,818	0	5,102	7.0
안전도시 서울 구현	118,450	107,769	0	10,681	9.0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94,842	355,385	0	39,457	10.0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587,710	521,748	0	65,962	11.2
일 반 예 산 계	**571,126**	**443,426**	**0**	**127,700**	**22.4**
기본경비	571,126	443,426	0	127,700	22.4

○ 감사위원회의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을 살펴보면,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은 계획 변경으로 전액(3백만원) 미집행되었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2022년도에는 전액(1천만원), 2023회계연도에는 1천 4백만원(불용률 71.6%)

불용처리하였고, 동 사업의 '포상금'은 2022년도에는 8백만원(불용률 72.4%), 2023회계연도에는 7백만원(65.0%) 불용 처리하는 등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 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 현황(통계목별)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 용 사 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0	5,177	1,823	26.0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점검 관련 간담회 실시 축소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발생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 여비	20,000	5,677	14,323	71.6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출장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포상금	11,400	3,995	7,405	65.0	'23년 하정청백리상 수상자가 본상 1명(2,000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불용 발생 (대상 1명, 본상 1명 미선정)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12,900	4,100	8,800	68.2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3조에 의거 투출기관에 표창 및 포상하는 경우 부상 수여가 제외되어 상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 발생
기본경비 (감사담당관)	국내여비	215,600	114,738	100,862	46.8	현장 감사 실시축소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지급 감소
기본경비 (안전감사담당관)	공공운영비	1,200	645	555	46.2	'23년 출장 대상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부분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관용차량 이용이 저조하였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특정업무경비	19,440	15,384	4,056	20.9	현원 감소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액 감소
인권정책 홍보 강화	행사실비 지원금	3,000	0	3,000	100.0	'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전담부서 신설로 지자체 인권행정 협력사무 일원화에 따라 지자체 협의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미집행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무관리비	2,000	1,326	674	33.7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집행지침 인쇄비 예산절감
기본경비 (인권담당관)	사무관리비	33,540	26,586	6,954	20.7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감소

1) “시정 청렴도 향상” 사업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 홍보 등을 통한 조직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억 4백만원을 집행하여 19.9%의 예산(2천 6백만원)을 불용 처리했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30,900**	**104,786**	**26,114**	**19.9**
사 무 관 리 비	90,000	85,615	4,385	4.9
국 외 업 무 여 비	**20,000**	**5,677**	**14,323**	**71.6**
시 책 추 진 업 무 비	9,500	9,499	1	0
포 상 금	11,400	3,995	7,405	65

※ 불용사유

- 국외업무여비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출장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 포상금 : ’23년 하정청백리상 수상자가 본상 1명(2,000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불용 발생(대상 1명, 본상 1명 미선정)

- 이중 ‘국외업무여비’는 높은 국제청렴도 지수 국가 및 도시의 청렴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편성된 예산(2천만원)으로 감사위원회는 2021년에는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2천만원) 감액하였고, 2022년에는 하반기 국외공무출장 제한 유지로 전액(1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023회계연도에는 국외공무출장이 허용되었으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2천만원 중 560만원을 집행하고, 1천 4백만원(불용률 71.6%)을 불용처리 하였음.

※ ‘국외업무여비’ 560만원 집행은 2023년 10월 “일본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으로 집행하였음.

※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인력개발과-2309)」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어려움 감안,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하고, 단순 벤치마킹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0,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10,000	0	10,000 (100%)	**20,000**	**5,677**	**14,323 (71.6%)**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1] 통해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2022년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는 71.6%(불용액 1천 4백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음.

-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878), 제안일 2023년 5월 30일.

○ 감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과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을 위해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포상금’ 1천1백40만원 중 ‘하정 청백리 포상금’ 9백만원)”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포상금’ 1천2백90만원)” 사업에서 각각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하정 청백리상’은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가운데 청렴하고 시민에 헌신하는 직원을 선정·수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풍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상자가 없어 ‘하정 청백리상 포상금’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2023회계연도에도 본상 1명 수여로 2백만원을 집행하고, 77.8%(불용액 7백만원)를 불용 처리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자가 없어 ‘포상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상자를 발굴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하정청백리 포상금 집행 현황(2019년~2023년)** 〉

(단위 : 천원)

명 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급내용
하정 청백리	2019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0	9,000	7,000	- 대상 : 1명 - 본상 : 1명
	2021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2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3	**9,000**	**2,000**	**- 본상 : 1명**

- 또한,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은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을 통하여 수범사례 전파 및 기관의 자정을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청렴실천 사례 공모 유인확보 등을 통한 포상 금액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22년도 예산(690만원)보다 증액하여 1천 2백 9십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10만원을 집행하고, 88.2%(불용액 880만원)를 불용 처리하고 있음.

- 특히,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은 투자출연기관은 표창만 가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포상금’의 불용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포상 금액 현실화 필요에 따라 증액 편성(’22년 690만원 → ’23년 1,290만원)하였음에도 880만원(88.2%)을 불용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세밀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삭감 조치 등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금 집행 현황(2019년~2023년)** 〉

(단위 : 천원)

명 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급내용
반부패 청렴우수 사례	2019	5,200	1,900	- 반부패 우수기관 · 우수 : 3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우수 : 2명, 장려 : 4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0	6,900	3,9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1	6,900	2,0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2	6,900	6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2023	**12,900**	**4,100**	- 반부패 우수기관 · 최우수 : 1개 기관, 우수 : 2개 기관, 장려 : 3개 기관 - 청렴실천 우수직원 · 최우수 : 1명, 우수 : 2명, 장려 : 3명 ※ 투출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

※ 투자출연기관의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 기부행위에 포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창과 포상, 청렴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2022년에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었고, 2023년에는 청렴노력도가 전년(2등급)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과 같음.[2)]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는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하고, '청렴체감도'는 외부 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 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 부패실태 감점(10%+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더욱이,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 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가 서울시는 2년 연속 4등급이며,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내부 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한 시책효과 체감 정도 평가인 청렴노력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3년에는 3등급으로 하락하였는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과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과 노력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청렴도 향상은 단순히 사업추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한바, 행사성 사업 측면의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통해 예산투입 대비 더 나은 성과 도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12., 118면 참조.

- 특히, 2023년 12월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 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다수의 부정적인 보도로[3] 인해 신뢰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육 등 청렴한 공직 풍토 강화,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적발시 엄중 문책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감사원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2023.12.) 〉

(가) 기관정기감사 분야

①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업무 부당 처리) 서울특별시는 'AI 양재허브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선/차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규정에 따라 이들과 협상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했는데도

- 우선협상적격자인 ㉮대 컨소시엄이 내부 갈등으로 협상을 포기하자 차순위협상적격자와의 협상절차 없이 협상 불가 통보 후 재공모를 통하여 최초 우선협상적격자 중 ㉮대가 새롭게 구성한 단체와 협약을 체결

②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 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서울특별시 A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 9회에 걸쳐 10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총 11명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 ㉮사업소 B는 2019. 10. 25.부터 같은 해 11. 2.까지 6일간 병가기간에 이탈리아로 국외여행을 가는 등 총 21명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부정한 병가 사용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

- ㉯과 C는 2023. 1. 9.부터 같은 해 3. 14.까지 15차례에 걸쳐 개인운동을 위해 외출한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총 198명이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5,146,600원을 부당 수령

※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2023.12., 8면 재인용.

3) SBS, "골프 접대받고 병가로 해외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 감사원 적발"등 2024.1.11. 등 다수의 언론매체 보도.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은 분야별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정책 등의 심의·자문으로 인권친화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천 5백만원을 집행하여 11.8%의 불용률(불용액 740만원)을 보이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55,140**	**7,400**	**11.8**
사 무 관 리 비	30,500	27,156	3,344	1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0	12,600	0	0%
특 정 업 무 경 비	19,440	15,384	4,056	20.9%

※ 불용사유

▸ 특정업무경비 : 현원 감소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액 감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중 ‘특정업무경비’는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1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20.9%(불용액 4백만원)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인권담당관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지급함.

- 2022년 8월 19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 편입된 이후, 2022년 인권담당관 정원은 20명에서 2023년 1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원은 15명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감소에 따른 불용이라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0년	130	129	49	44	17	17	31	28	33	39		
2021년	131	127	45	41	22	21	31	27	33	37		
2022년	153	147	45	41	22	21	31	29	35	40	20	15
2023년	152	145	45	42	22	20	31	27	35	40	19	15
2024년 (5.20.기준)	152	148	45	41	22	21	31	28	36	42	18	15

※ 감사위원장 정·현원은 감사담당관에 포함.

※ 인권담당관은 2022년 8월 19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 단독기구에서 감사위원회로 편입되었음.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최근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이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바,[4] 제3기 인권위원회 임기('19.3.20. ~ '22.3.19.)가 2022년 3월에 만료되었음에도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은 2022년 11월에 1차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고, 2차로 2023년 2월에 정원 15명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2022년도에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회의 개최 감소 등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권위원회 개선권고가 2021년 5회에서, 2022년 2회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인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음에도 개선권고는 1건으로, 인권위원회 기능의 회복 및 활동의 강화·확대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제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현황 〉

연번	성 명	성 별	직 위	임 기
1	배○○	남	위원장	'22.11.1.~'25.10.31.
2	오○○	남	부위원장	'22.11.1.~'25.10.31.
3	구○○	남	위원	'22.11.1.~'25.10.31.
4	도○○	남	위원	'22.11.1.~'25.10.31.

4) 경향신문, "서울시인권위원회, 활동 줄고 '법조인 일색'", 2024년 5월 23일자 참조.

연번	성 명	성 별	직 위	임 기
5	박○○	여	위원	’22.12.1.~’25.11.30.
6	배○○	여	위원	’23.2.16.~’26.2.15.
7	소○○	여	위원	’23.1.1.~’25.12.31.
8	이 ○	남	위원	’22.11.1.~’25.10.31.
9	이○○	여	위원	’23.2.16.~’26.2.15.
10	조○○	여	위원	’23.2.16.~’26.2.15.
11	채○○	남	위원	’22.11.1.~’25.10.31.
12	최○○	남	위원	’22.11.1.~’25.10.31.
13	박○○	남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2.11.1.~’25.10.31.
14	이○○	여	위원	’23.12.20~’26.12.19.
15	이○○	남	위원 (당연직)	’24.1.1.~현 재

* 4기 인권위원회 구성 완료 일자
  ’22.11. 1. 4기 인권위원회 구성 (위원 10명) ※ 정원 15명 중 10명으로 출범(공석 5석)
  ’22.12. 1. 신규위촉 추가 (위원 1명)
  ’23. 1. 1. 신규위촉 추가 (위원 1명)
  ’23. 2.16. 신규위촉 추가 (위원 3명) ※ 정원 15명 구성 완료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최근 5년간 인권위원회 개최 및 심의·자문 등 현황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위원회 개최	정기회 임시회	4회 2회	4회 3회	4회 2회	2회 0회	4회 0회
	소위원회	6회	8회	8회	0회	12회
심의·자문*		15건	23건	12건	3건	12건
개선권고*		1회	4회	5회	2회	1회

* 정기회·임시회 안건상정 기준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최근 3년간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내용 〉

연도	권고시기	권고내용
2023년	’23. 12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2022년	’22. 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권고
	’22. 3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권고
2021년	’21.1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고
	’21. 5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
	’21. 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
	’21.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21. 3	재난상황 아동 공적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

※ 출처 : 감사위원회 2024년 5월 30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3)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

○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은 인권정책 홍보를 통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20.0%(불용액 720만원)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28,849**	**7,201**	**20.0%**
사 무 관 리 비	33,050	28,849	7,201	21.8%
행 사 실 비 지 원 금	3,000	0	3,000	100%

※ 불용사유

▸ 행사실비지원금 :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전담부서 신설로 지자체 인권행정 협력사무 일원화됨에 따라 지자체 협의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미집행

-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 중 ‘행사실비지원금’ 전액(3백만원) 미집행은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전담부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협력사무 일원화에 따른 것이나, 미집행에 따른 불용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추경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6일부로 지역인권증진팀(TF)를 구성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27,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전담부서 설치 안내 및 협조 요청, 2023.2.23. 참조).

4)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불용 과다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고,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5억7천1백만원) 중 4억 4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전년(22.8%, 불용액 1억2천9백만원) 보다 감소한 22.4%(불용액 1억2천8백만원)를 보이고 있고, 감사담당관(불용률 33.2%)과 인권담당관(불용률 18.7%)이 “기본경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일 반 예 산 계	**571,126**	**443,426**	**0**	**127,700**	**22.4**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51,971	235,082	0	116,889	33.2
기본경비(공공감사담당관)	38,246	35,438	0	2,808	7.3
기본경비(안전감사담당관)	52,033	51,475	0	558	1.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기본경비(조사담당관)	91,736	91,244	0	492	0.5
기본경비(인권담당관)	37,140	30,186	0	6,954	18.7

-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는 2023회계연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의 ‘국내여비’까지 포함하여 편성함에 따라 전년(1억8천6백만원)보다 증액한 2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46.8%(불용액 1억원)를 불용하고 있음.

〈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351,971**	**235,082**	**116,889**	**33.2%**
사 무 관 리 비	120,771	104,751	16	13.3%
국 내 여 비	215,600	114,738	100,862	4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0	9,893	7	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0	5,700	0	0.0%

※ 불용사유

▸ 국내여비 : ’23년 각종 감조사 현지 출장 비율이 낮아 출장여비 지급이 감소

- 감사위원회는 ‘국내여비’ 불용사유를 2023년 각종 감·조사 현지 출장 비율이 낮아 출장여비 지급이 감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21년 7천3백만원 → ’22년 9천2백만원 → ’23년 1억원), 감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예산 편성시 과거 결산 결과 등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186,200	112,743	73,457 (39.5%)	186,200	94,167	92,033 (49.4%)	**215,600**	**114,738**	**100,862 (46.8%)**

나.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감사위원회는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자체 감사실시건수 및 공직기강 확립 건수(건)”,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건)”,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전문가수(명)”, “안전감사 실시 건수(건)”, “재산등록 심사 보완지시 이행률(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등 총 5건의 성과지표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목표가 동일하며, 2022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2023년 목표를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안전감사 실시 건수(건)”는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 감사위원회는 성과지표를 전례답습적·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 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한다고[5]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성과지표

5)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5월 29일, 90면 재인용.

및 목표설정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정책사업목표 :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자체 감사실시건수 및 공직기강 확립 건수(건)	감사실적 확인	**목표**	**20**	**20**	**20**
		실적	35	33	38
		달성률(%)	175%	165%	190%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건)	사전컨설팅 실시 건수	**목표**	**60**	**60**	**60**
		실적	68	87	76
		달성률(%)	113%	145%	127%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전문가수(명)	시민전문가 참여 건수	**목표**	**80**	**80**	**80**
		실적	134	184	230
		달성률(%)	168%	230%	287%

정책사업목표 : 사전예방적 안전감사 강화로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안전감사 실시 건수(건)	안전감사(하도급 포함) 실시 횟수	목표	**15**	**15**	**14**
		실적	16	16	15
		달성률(%)	107%	107%	107%

정책사업목표 : 비리발생 사전예방 및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 강화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재산등록 심사 보완지시 이행률(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심사 보완지시 결과 확인	목표	**100**	**100**	**100**
		실적	100	100	100
		달성률(%)	100%	100%	100%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